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「민간위탁 관리지침」 전부개정**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.

〈 주요 개정내용 〉

-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신규 마련
 -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분석을 위해 공공성과 효율성 중심의 분석기준 마련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
 - 민간위탁 사무선정 및 수의협약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의 적절성 및 사무운영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
- 구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
 - 신규 및 재위탁 모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인 경우, 성과평가결과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시 반영
- 지도·점검을 위한 기준항목(안) 신규 마련
 - 회계의 투명성 및 종사자 근로여건, 운영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항목(안) 신설
- 사후관리 등 그 밖의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

붙임 「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 개정(안) 및 관련 서식 각1부. 끝.

